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17가단76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변경전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Q 대 10㎡ 중 별지 목록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0. 4.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R은 S 소유이던 서울 중구 T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을 1980. 2. 25.경 S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1980. 3.경까지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26139호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을 선고받아 1998.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3. 31.경 위 T 토지 및 건물을 R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0. 4.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T 토지 및 건물의 담장 내에는 T 토지와 인접한 서울 중구 Q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S은 1983. 3. 5.경 사망하였고, 현재 S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위 T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2000. 4. 10.로부터 20년 전인 1980. 4. 10.부터 R이 이 사건 토지를 S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0. 4. 11.자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유자인 R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0. 4.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I, H의 주장을 타주점유에 관한 주장 등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타주점유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H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별지 목록 (상속지분 표)		
당) / 의 상속인		
피고1		상속지분: 3분의1 중 2분의 1
피고2		상속지분: 3분의1 중 2분의 1
당) / 의 상속인		
피고3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피고4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피고5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피고6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당) / 의 상속인		
피고7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피고8		상속지분: 3분의1 중 4분의 1
당) / 의 상속인 당) 의 대습상속인		
피고9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9분의3
피고10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9분의2
피고11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9분의2
피고12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9분의2
당) / 의 상속인 당) 의 대습상속인		
피고13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2분의 1
피고14		상속지분: 3분의1의 4분의1 중 2분의 1

